

# 제설기관 공조체계구축 협약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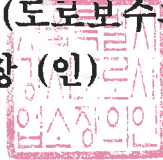
## □ 협약대상자

### 1. 강서도로사업소

주 소 :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 (☎02-2657-7951)

기관명 :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(도로보수과)

성 명 :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(인)



### 2. 남부도로사업소

주 소 :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(☎02-3284-5442)

기관명 :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(도로보수과)

성 명 :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(인)

## □ 협약내용

### 제1조(목적)

겨울철 폭설로 인한 자치단체간 경계지역 제설작업 지연시 지방자치 단체간 제설작업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폭설로 인한 시민의 도로교통 불편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협약기간)

협약기간은 제설대책기간 (2019.11.15 ~ 2020. 3.15)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### 제3조(협약내용)

- 1) “강서도로사업소”와 “남부도로사업소”는 겨울철 강설시 제설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로 협조하므로서 시민의 교통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
- 2) “강서도로사업소”와 “남부도로사업소”는 다음 지역의 제설작업 시행시 먼저 작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경계구간으로 설정된 구간(제설작업 협조구간)의 제설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
- 3) 위 제설작업에 투입된 인력, 장비, 자재 등 비용은 투입기관의 지역 주민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보아 정산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
- 4) “강서도로사업소”와 “남부도로사업소” 지역의 경계구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.

**제4조(안전사고)**

“강서도로사업소”와 “남부도로사업소”는 상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제설작업중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상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
**제5조(제설작업에 대한 책임)**

“강서도로사업소”와 “남부도로사업소”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상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제설작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

부 칙 “강서도로사업소”와 “남부도로사업소”는 본 협약서를 2부 작성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**첨 부 경계구간 설정 내역**

**【경계구간 설정 내역】**    경계지점 —————    경계구간 .....

노 선 명	경계지점	경계구간	비 고
올림픽대로	당산철교 하부	당산철교하부 기준 양방향 100m	
노들길	서울교 하부	서울교 하부 기준 양방향 100m	

**- 위치도**



<올림픽대로>



<노들길>